

청문조서 열람·확인 공시송달 공고

[전통시장(상계시장)인정취소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·확인 알림]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의2(시장의 인정 취소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2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, 「행정절차법」 제34조 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·확인을 통지하고자 하오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아 통상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아래와 같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※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

2022. 4. 19.

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



1. 공 고 명 : 전통시장(상계시장)인정취소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·확인 알림

2. 공고기간 : 2022.4.19.~2022.5.3.(15일간)

3. 공고내용

가. 처분의 내용

시장명	개설연도	청문실시일	소재지	취소사유
상계시장	1974	2022.3.31. 10:00	노원구 덕릉로 102길5	전통시장 기능상실

4. 열람기간 : 공고기간 내

5. 청문조서 열람·확인 및 문의처 : 서울시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
(☎02-2116-3488)

6. 귀하는 「행정절차법」 제34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·확인할 수 있으며,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7. 아울러, 위 기간 내에 청문조서의 열람·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이 종결되고 시장 인정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.